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사서자격증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고 도서관 폐관 신고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별지서식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서자격증 온라인 발급을 위한 신청 간소화(안 제3조)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 규정 삭제
- 2)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개정함

나. 도서관 폐관 신고 간소화(안 별지16호서식)

- 1)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폐관 신고 시 분실사유 기재로 등록증 제출을 대체하도록 개선함

다. 별지서식을 현행화 함(안 별지 1호 서식, 안 별지 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 제4조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①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① -- ----- ----- ----- -----에 <u>영 제4조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u> ----- ----- ----- --.
1. <u>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u>	<u><삭 제></u>
2. <u>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u>	<u><삭 제></u>
<u><신 설></u>	<u>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③ (현행 2항과 같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후략)	④----- -- <u>제3항</u> ----- ----- ---

도서관 인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도서관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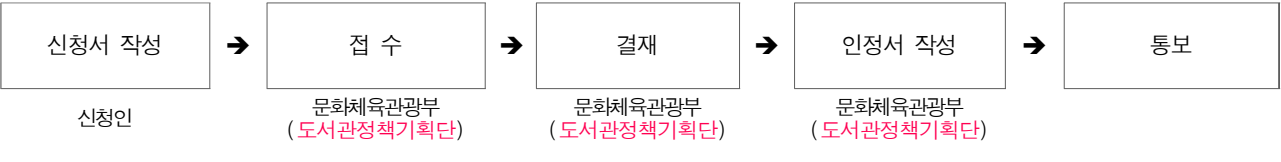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발급
사서자격증 ☐ 재발급 신청서
☐ 기재사항 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휴대폰	

※ 다음 사항은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자격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자격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 사서자격요건 제 호			
	출 신 학 교	대학	과(학부) 졸업()	학 전공/부전공)
		대학원	학위()	학 전공)
	기존 소지자격	☐ 2급정사서 ☐ 준사서 ☐ 해당사항 없음		
이수교육과정				

※ 다음 사항은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격증	종 별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번 호	발급연월일		
재발급 신청사유				

※ 다음 사항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격종별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변경사항			

-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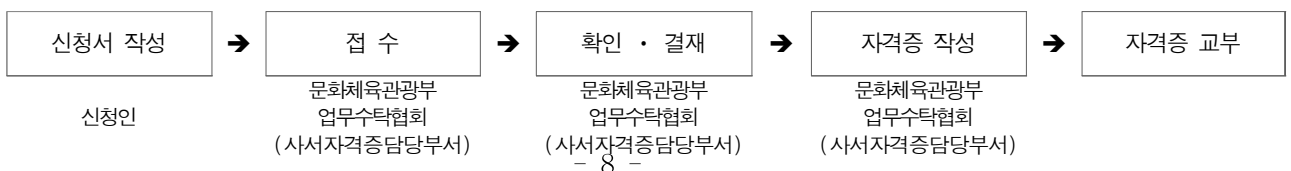
첨부서류	※ 발급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서자격증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이수교육 과정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 폐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병원도서관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설 립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유				폐업일	

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의
의
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업자	도서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이
호
지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첨부서류	1. 도서관 등록증 원본 ※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도서관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폐관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8